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1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건강가정기본법」 개정(2012.3.16시행)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되고, 운영실적이 저조한 “서울특별시 건강가정위원회”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)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협의완료(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)
- (2) 조직담당관(위원회) : 협의완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해당사항 없음(미첨부사유서 별첨)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협의완료(평가제외)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협의완료(원안동의)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2. 5. 3~ 2012. 5.23)결과 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(제3조부터 제10조까지)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----|
| 제2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 | <삭 제> |
| 제3조 (설치 및 기능) ①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강가정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. 1.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 립·시행 2.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 한 사항 3.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. 그 밖에 건강가정정책과 관련하 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| <삭 제> |
| 제4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③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, 복지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및 해 당 관계공무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 1. 시의회 의원 | <삭 제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-----------|
| <p>2. <u>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3. <u>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</u></p> <p>4. <u>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가정 관련 상담 및 활동을 하는 자</u></p> <p>④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| |
| <p>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<u>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u></p> <p>② <u>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| <p>〈삭 제〉</p> |
| <p>제6조 (회의 등) ① <u>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</u></p> <p>② <u>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| <p>〈삭 제〉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7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된다.</p> | <p><삭 제></p> |
| <p>제8조 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| <p><삭 제></p> |
| <p>제9조 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<삭 제></p> |
| <p>제10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| <p><삭 제></p> |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『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4조(비용추계서 작성)
제2항제1호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,
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세입·세출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개정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 : 저출산대책담당관 가족정책팀 김종실